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52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0526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1246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변론 종결 2024. 2. 6.

판결 선고 2024. 3. 14.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가단12464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7. 6. 자 40,000,000원 증여계약 및 2017. 7. 14. 자 2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가.항 또는 나.항과 같이 청구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또는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7. 6. 자 50,000,000원, 2017. 7. 14. 자 2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동일한 일시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자를 C로 볼 것인지, D로 볼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하 '제1, 2 선택적 청구'라고 한다).

나. C 또는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6. 29. 자 100,000,000원, 2017. 7. 14. 자 1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동일한 일시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자를 C로 볼 것인지, D로 볼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하 '제3, 4 선택적 청구'라고 한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제1, 2 선택적 청구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제3,4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2021. 12. 1. 해산간주되었다)와 사이에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C 대표이사이던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1	E	450,000,000원	2016. 3. 24.	2018. 3. 23.	기업은행
2	F	648,000,000원	2016. 4. 12.	2018. 4. 11.	기업은행
3	P	342,000,000원	2016. 4. 19.	2018. 4. 18.	기업은행

2) C는 2018. 1. 24.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8. 4. 5. 기업은행에 합계 1,454,486,365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625,447원 및 그중 1,454,314,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8. 5. 10. 자 2018차전 8063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부동산 매수

1)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2017. 7. 6. H과 서울 성북구 I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53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480,000,000원은 2017. 7. 14.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특약에 의하면, 매도인 H이 전세금 250,000,000원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고일부터 이주기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개정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7.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H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매매잔금에서 전세보증금 250,000,000원과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5,500,000원(= 매매대금 530,000,000원 - 계약금 50,000,000원 -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 기존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2017. 7. 21.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4,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7. 6.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4.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서 액면금 80,000,000원과 1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993년생의 외국인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위 돈 합계 280,000,000원은 배우자인 D 또는 D가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D와 C는 원고에 대해 관련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1,454,625,447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였던바, D 또는 C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C가 피고 계좌로 직접 2017. 6. 29.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D의 동생인 M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7. 7. 14.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시점과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 또는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시점이 불일치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C 또는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되, 선택적으로,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7. 7. 6. 자 50,000,000원과 2017. 7. 14. 자 23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취소(제1, 2 선택적 청구) 또는 피고가 돈을 이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017. 6. 29. 자 100,000,000원과 2017. 7. 14. 자 1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취소(제3, 4 선택적 청구)를 청구하고, 각 그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으로서의 돈 지급을 청구한다.

3. 원고의 제3, 4 선택적 청구 추가에 대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4 선택적 청구가 제1심 법원에서 하였던 제1, 2 선택적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그 청구 추가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의 제1, 2선택적 청구와 제3, 4 선택적 청구는 C 또는 D가 직접 또는 M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일련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 돈이 어느 시점에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지(어느 시점에 원피고 사이에서 위 돈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4 선택적 청구는 제1, 2 선택적 청구와 그 취소 대상으로 삼은 법률행위 및 목적물을 서로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4 선택적 청구는 제1,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제1, 2 선택적 청구의 취지를 보충 내지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4 선택적 청구는 제1, 2 선택적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4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가 필요하거나 종래의 심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3,4 선택적 청구 추가가 소송절차를 부당하게 현저히 지연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그밖에도 원고가 추가한 제3, 4 선택적 청구 중 일부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2, 3, 4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3, 4 선택적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 주장의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 24. C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8. 4. 5.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를 하였던바,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C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의 증거들과 갑 제6,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직접 또는 M를 통해 총 2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중 4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21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으로 각 사용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시점에 위 40,000,000원과 21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각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피고는 1993년생의 외국인으로 D와 결혼하여 2013년생과 2017년생의 두 자녀를 양육하였던바(혼인신고는 2015. 2. 18.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소득을 얻었다거나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우자 D가 대표이사인 C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약 17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 중 40,000,000원은 피고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7. 6. 29. C가 입금한 102,250,000원 중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40,000,000원으로 지급되었고, 잔금 중 80,000,000원은 피고가 위 K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150,000,000원은 M가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인출해 준 자기앞수표 150,000,000원으로 각 지급되었던바, C가 2017. 6. 29. 102,250,000원을 입금하기 직전 피고의 K은행 계좌 잔고가 26,186,968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 중 위 40,000,000원(계약금)과 60,000,000원(잔금) 및 150,000,000원(잔금)은 피고 본인의 재산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2017. 5. 17.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C가 2017. 6. 29.에 피고 계좌로 입금한 100,000,000원을 가리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내지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C의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의 사정들과 ③, ④항의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C가 피고 계좌로 이체한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나머지 60,000,000원은 피고 계좌에 있었던 20,000,000원과 합하여 액면금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인출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으로 각 사용되었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던바, 이로써 C와 피고 사이에는 위 40,000,000원과 6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이를 피고에게 총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M로부터 96,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본인 돈 4,000,000원을 보태어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C와 피고, M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M가 직접 C에게 대여하는 것이 더 간명하였을 것이다),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M로부터 9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내세우는 차용증(을 제1호증)은 2017. 7. 21.을 작성일로 하여 피고가 2015. 9. 21.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총 260,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로 그에 기재된 구체적 차용내역은 별지와 같다.

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7. 3. 30.까지 M로부터 12회에 걸쳐 적게는 5,000,000원을, 많게는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다음 그 합계액 96,000,000원을 (약 2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던 중에 2017. 5. 17. C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호증은 해당 시점에 그 주장의 현금이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금융자료에 불과하여(피고는 특정 시점의 입금 내역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96,000,000원(을 제1호증에 기재된 차용내역 중 자기앞수표로 차용하였다는 2017. 7. 14. 자 150,000,000원과 2017. 7. 21. 자 1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M로부터 전부 현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무엇보다 피고는 애초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차용증에 기재된 총 260,500,000원을 전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바(피고의 2022. 8. 23. 자 답변서), 차용증에 기재된 돈 중 96,000,000원이 피고가 C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의 일부라는 위

주장은 피고 스스로 하였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C가 M의 계좌로 이체한 돈 중 150,000,000원은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인출되어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다. C와 M, 피고와의 관계를 비롯한 아래 내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C와 피고 사이에는 위 15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017. 7. 14.에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C는 2018. 1.경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2021. 12. 1.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되었다. M는 C 대표이사인 D의 동생이었을 뿐 아니라 본인 역시 2013. 12. 13.부터 2016. 7. 26.까지는 C 대표이사, 2016. 7. 26.부터는 C 사내이사였으므로(2017. 11. 24.과 2017. 12. 20.에는 C로부터 약 500만 원 정도씩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C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C는 피고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던 날인 2017. 6. 29.에 M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Q 계좌'라고 한다)로 총 310,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이 송금되기 직전 Q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는데(잔고 -48,677,698원) C가 위와 같이 송금한 결과 잔액이 262,072,302원이 되었고, M는 2017. 7. 5. 위 계좌에서 3억 원을 본인의 다른 계좌(J은행(계좌번호 4 생략), 이하 'R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는 위 수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C와 M, 피고 상호간 및 M 명의의 Q 계좌와 R 계좌 사이에 있었던 돈의 흐름,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50,000,000원은 그 지급 시점에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150,000,000원을 M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M가 C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않았더라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빌려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었던 점, 즉 C가 Q 계좌에 310,750,000원을 송금하기 전 위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Q 계좌로부터 3억 원이 입금되기 전 R 계좌의 잔고는 11,930,256원에 불과하였던 점, 각 입금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D, M,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제소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㉔ 피고는, M와 C 사이의 거래 내역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만 주장하다가(1심에서 제출된 피고의 2023. 3. 31. 자 준비서면),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M가 C에게 2017. 3. 7.과 2017. 3. 15. 및 2017. 5. 17.에 각 100,000,000원씩을 대여하였다가 그 합계 300,000,000원을 2017. 6. 29.에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24. 1. 2. 자 항소이유서). 그러나 당시 M는 C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D의 동생으로 수년간 C의 이사 지위에 있었던바 이러한 인적관계 및 피고 주장의 일시에 있었던 계좌이체 내역 외에 C의 M에 대한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㉕ C가 피고에게 직접 또는 M의 Q 계좌와 R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7년 7월 한 달 동안 C 또는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17. 7. 6.)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7. 7. 14.)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증여를 전부 부인하면서 스스로 '2017년 7월'의 피고 계좌내역과 2017년 6, 7월의 M의 'R 계좌'내역(을 제4호증)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피고의 2022. 9. 7. 자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된 서증), 위 자료에는 C와 피고 또는 C와 M 사이의 이체 내역이 부존재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C가 '2017. 6. 29.' 피고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M의 'Q 계좌'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각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피고는 C가 M에게 3억 원 이상을 이체한 M의 Q 계좌는 밝히지 않은 채 R 계좌의 자료만을 제출하였고, C가 피고에게 2017. 6. 29.에 1억 원을 이체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2017년 7월의 계좌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계속해서 피고와 D 사이의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6개월 이상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와 D가 부부라는 사실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졌다.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Q 계좌에 관한 2017. 6. 29. 자 이체내역 또는 D와의 관계 등을 밝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을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인바, 채무자인 C를 둘러싼 인적 관계, 즉, C와 D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C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며 M는 D의 동생이라는 사정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돈의 흐름까지 종합해 보면, 앞서 본 C와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C의 무자력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적어도 2018. 5.경 당시에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포함하여 2,494,26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세금 2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C의 채무상태는 C가 피고에게 직접 또는 M를 통해 돈을 지급하고 또 피고가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2017년 6월 내지 7월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C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이처럼 C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직접 또는 M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돈 중 2017. 7. 6. 40,000,000원을, 2017. 7. 14. 60,000,000원과 15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던바,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7. 6. 자 40,000,000원 및 2017. 7. 14. 자 210,000,000원(60,000,000원과 150,000,000원의 합계액)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증여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C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7. 7. 6. 자

40,000,000원과 2017. 7. 14. 자 2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합계 250,000,000원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상, C가 아닌 D와 피고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의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는 제2 선택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7. 6. 29. 자 100,000,000원과 2017. 7. 14. 자 1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 취소와 합계 250,000,000원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3, 4 선택적 청구는, 앞서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 2 선택적 청구와 피고에게 돈이 귀속되는 시점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제3 또는 제4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앞서 제1 선택적 청구 중 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을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제3, 4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과거 C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와 이제야 연락이 되어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한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2024. 2. 22.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 등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소송 경과와 진행상황,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사유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선택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4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백숙종

판사유동균

별지